

##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 고시

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11월 05일

# 파 주 시 장

### I 법적근거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)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(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)

#### ▪ 법 제5조

(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#### ▪ 시행령 제4조

(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)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## Ⅱ 계획수립 범위

- 공간적 범위 : 파주시 전역
- 시간적 범위 : 2026년~2030년(5년간)
- 계획대상 : 공중화장실, 개방화장실, 이동화장실, 간이화장실 등
- 수립내용 : 기본방침, 장기전망, 공중 및 개방화장실 등의 연차별 설치계획, 사업비 조달 계획 등

## Ⅲ 기본방침

-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
-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화장실 공간 조성
-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정 유지 및 운영 확대
-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 시민 이용편리 및 안전 강화

## Ⅳ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

- 시민과 관광객 증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청결 유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
- 시민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청결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 될 전망

## Ⅴ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

- 공중화장실 현황 (2025. 10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계	공공 시설	교통 시설	관광 체육시설	주유소 충전소	상업 시설	기타
720	98	14	119	173	289	27

□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(2025. 10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구분	합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비고
신축	8	2	2	2	1	1	예정
대수선	5	1	1	1	1	1	

## VI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

□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(2025.11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계	공공기관	민 간
220	169	51

□ 민간 개방화장실 연차별 지정계획(2025. 10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구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계
신규	2	2	2	2	2	10
누적	53	55	57	59	61	61

□ 개방화장실 지정 방향

-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, 전통시장, 민간시설 등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 지정
- 시민 편의를 위한 개방화장실 안내 표지판 설치 등
- 분기별 편의용품 지원 등

## VII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분	합 계	2026년 사업비	2027년 사업비	2028년 사업비	2029년 사업비	2030년 사업비
합 계	1685	333	335	337	339	341
유지관리 (편의용품 등)	1410	278	280	282	284	286
환경개선	275	55	55	55	55	55

## VIII 공중화장실 수급에 필요한 사항 등

- 공중화장실 특별 관리 기간 지정 운영
  - 행락철 : 매년3월~10월(봄~가을)
  - 휴가철 : 매년7월~8월(여름)
  - 관리방안
    - 이용객 증가에 따라 市 관리 공중화장실은 부서별 청결관리 협조 요청
    - 공중화장실 수시 점검(불법카메라 단속, 시설물 관리 상태 등)